

작성 방법

- 1.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란: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기 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.**
2. ② 「법인세법」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란: 당기에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법인이 이월공제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같은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.
- 3. ③ 차감한도란: 해당연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외국법인세액의 한도를 의미하며, ① 당기 법인세 과세표준과 ② 「법인세법」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금산입액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.**
- 4. ④ 이월된 외국법인세액란: 과년도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해당연도에 전부 차감하지 못하여 이월된 금액으로 이월기간이 남아있는 금액을 적습니다.**
- 5. ⑤ 당기 외국법인세액 발생액란: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으로, 해당연도에 발생한 같은 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.**
6. ⑥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 합계란: ④ 이월된 외국법인세액과 ⑤ 당기 외국법인세액 발생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.
7.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란: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⑥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 중에서 ③ 차감한도 내의 금액을 적습니다.
8. ⑧ 이월배제액란: 해당연도 미차감액 중 이월기간이 경과하여 이월되지 않는 금액을 적습니다.
9. ⑨ 차기 이월대상금액란: ⑥ 당기 차감 대상 외국법인세액 합계에서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과 ⑧ 이월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- 10. ⑩ 연도별 차감내역은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액의 계산액을 적습니다.**
- 11. ⑪ 사업연도란과 ⑫ 당초 외국법인세액 발생액란: ⑩ 사업연도란에 직전 15개 사업연도 중 외국법인세액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고, ⑪ 당초 외국법인세액 발생액란에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.**
12. ⑬ 전기 누적 차감액란: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미 차감한 외국법인세액을 누계로 적습니다.
13. ⑭ 당기 차감대상 세액란: ⑪ 당초 외국법인세액 발생액에서 ⑬ 전기 누적 차감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 이 때 ⑭ 금액의 합계는 ⑯과 동일합니다.
14. ⑮ 당기 실제 차감액란: ③ 차감한도에 달할 때까지 ⑦ 당기 실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로 적습니다. 이 때 ⑮ 금액의 합계는 ⑦과 동일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